

독일 환경책임법의 제정시 환경책임의 주요논쟁과 시사점

최명구*

차 례

I. 서론	IV. 환경책임법 제정에 대한 시사점
II. 독일 환경책임법과 수질관리법 제22조	1. 환경위험책임의 연결점
III. 독일 환경책임법의 제정시 주요논쟁	2. 환경작용요건의 종류와 제한
1. 환경위험책임의 연결점	3. 사고와 정상조업의 구별
2. 환경작용요건의 종류와 제한	4. 복수오염원의 책임범위
3. 사고와 정상조업의 구별	V. 결론
4. 복수오염원의 책임범위	
5. 소결	

I. 서론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일 환경책임법은 그 이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던 수질관리법¹⁾(Wasserhaushaltsgesetz)(1957년 제정)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1980년대 연이은 대형환경사고²⁾ 중 1986년 11월 스위스 바젤시

* 부경대 법학과 교수(Dr. iur.)

- 1) 전경운, 환경침해책임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7, 158쪽 이하 참조; 이 법은 수질뿐만 아니라 그 밖의 물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물관리법”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김민중(역), 에르빈 도이취, “독일 환경책임의 이론과 근본원칙”, 한독법학, 1991, 1쪽 참조).
- 2) 이탈리아의 세베소(Seveso-Chemischer Unfall, 1976), 인도의 보팔(Bhopal-Entweichungsunfall des Giftgases, 1984), 구소련의 체르노빌(Tscherobyl-Reaktorunfall, 1986), 스위스의 바젤(Basel-Chemischer Unfall, 1986) 등의 대형환경오염사고

에서 발생한 Sandoz사의 화재사건으로 인한 라인강의 오염이 큰 계기가 되어 1990년에 제정하게 되었다. 또한 환경오염에 관한 수질관리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수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책임”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행위책임”의 입법화에 따른 적용범위의 확대우려를 불식시키고 입법목적³⁾에 맞는 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질관리법의 행위책임(수질관리법 제22조)을 배제하고 시설책임으로 위험책임을 규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법률제정시 논란이 있었던 환경위험책임을 연결점, 가해작용의 범위, 사고·정상조업의 구별, 복수오염원의 책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80년 개정된 헌법에 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신설된 이후 산업화의 진전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화·다양화되자, 오염분야별 대책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환경법은 복수법 체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즉, 1990년 8월 1일에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 등 6개 법으로 분법화되었다. 그 뒤 2002년 1월 낙동강, 영산강, 금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하류간의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 등 기존의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위주의 정책을 사전예방중심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낙동강특별법, 영산강특별법, 금강특별법이 제정되어 환경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환경책임에 대한 환경책임법은 아직 제정·시행되고 있지 않다.

독일 환경책임법은 이미 오래전에 제정·시행된 법률이지만 해당법률의 제정 시 논의된 환경책임의 내용은 현재에도 법률에서 숨 쉬고 있기 때문에, 이의 검토와 분석은 장차 우리의 환경책임법의 제정시 환경책임에 대한 원칙과 이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우선 독일 환경책임법의 시설책임과 달리 행위책임을 취하고 있는 수질관리법 제22조와 비교하고, 그 뒤 제정시 문제된 환경책임의 주요내용인 환경위험책임을 연결점, 가해작용의 종류와 제한, 사고·정상조업의 구별, 복수오염원의

3) 환경책임법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조정의 목적(Ausgleichszweck), 예방의 목적(Präventivzweck), 효율촉진의 목적(Effizienzförderungszweck)으로서, 배상에 있어서 개별적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책임 등으로 나누어 법률내용과 반대제언을 검토·분석하고 이어서 제정될 우리나라 환경책임법의 제정시 환경책임에 대한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II. 독일 환경책임법과 수질관리법 제22조

환경책임법 제1조의 위험책임구성요건은 대기·물·토양오염 등 모두를 포함하지 않으며 그 규정구조가 수질관리법 제22조와 매우 다르다. 즉, 수질관리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책임(Handlungshaftung)과 시설책임(Anlagenhaftung)이라는 이원적 구조가 아닌 일원적 구조인 시설을 요건으로 한 환경작용(Umweltseinwirkung)에 대한 환경위험책임을 인정하고 있음으로써, 모든 시설을 유체적 위험원(Gefahrenquelle)과 연결시키고 있다⁴⁾. 따라서 환경책임법은 수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책임을 환경위험책임에서 배제하고 있다. 또한 시설로부터의 환경작용에 대하여 수질관리법 제22조 제2항과 달리 의도적으로 환경작용을 포함한 모두를 시설책임에 포함하고 있다.

수질관리법 제22조의 책임을 일반화함으로써 동조 제1항의 행위책임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⁵⁾. 행위책임의 도입은 책임범위를 넘어선 손해에 대하여 구성요건상 그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매우 일상적인 행위책임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되고, 이런 책임에서는 전적으로 인과관계에 따르게 된다. 일상 생활속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책임아래에서 최종소비자(예: 농촌, 가정)에 의한 환경위험이 일정한 제조물(예: 제조제 살포기, 세탁기)의 사용에 의하여 엄청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제조자는 제조물의 사용상 지배력부재, 검사에 대한 한계, 제어수단부족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 책임은 적절한 위험영역을 벗어난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일의 제조물책임법(ProdHaftG)에 따르면, 제조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제조물의 결함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피해자의 입증으로

4) Karl Larenz/Claus-Wilhelm Canaris, Lehrbuch des Schuldrechts II/2, 1994, S. 631

5) Bericht des Rechtsausschusses, BT-Drucksache 11/7811, 1990, S. 28 f.

제조물책임이 발생한다(독일 제조물책임법 제1조 제4항).

한편 환경책임법에서는 환경책임을 일정한 시설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수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의 행위책임은 위험책임의 일반적 체제를 벗어난 형태이고, 보편적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포괄적 환경위험책임의 도입에 있어서 환경책임에서 행위 책임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 때문에 의도적으로 수질관리법 제22조의 행위 책임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입법자는 위험 책임을 “고도의 위험원”에서 발생하는 위험손해에 근거하여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위험책임과 마찬가지로 위험원을 시설에서 찾으려고 한다. 따라서 환경책임에서 시설을 요건으로 하는 일원적 책임구성은 위험책임의 전통적 구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⁶⁾.

Ⅲ. 독일 환경책임법의 주요논쟁

환경책임법은 수질관리법 제22조의 행위 책임을 배제하고 시설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위험책임에 대한 전통적 구성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입법단계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었으며, 그 견해를 크게 네 가지 (1) 환경책임법에 따른 환경위험책임의 연결점 (2) 환경작용요건의 종류의 제한 (3) 사고, 정상조업(Normalbetrieb)의 취급 (4) 복수오염원(multifaktorielle Verschmutzungsquelle)의 책임범위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이 견해를 중심으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환경위험책임의 연결점

환경위험책임의 연결점의 문제는 환경위험 책임을 어느 것과 연관시켜서 책임을 부여하는가의 문제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게 그 위험원을 “시설” 또

6) Bericht des Rechtsausschusses, BT-Drucksache 11/7811, 1990, S. 27; Landsberg/Lülling, Umwelthaftungsrecht, Kommentar, 1991, § 1 UmweltHG, Rn.11 f.

는 “행위”에서 찾을 것인가로 대별된다. 더 나아가 시설에서 환경위험책임의 연결점을 찾는 견해에서도 구체적 위험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환경책임법의 내용과 환경책임법의 반대제언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환경책임법(연결점으로서 시설책임)

환경책임법은 전통적인 위험책임구성요건(예: 철도, 자동차, 전력시설, 관로시설)에 바탕을 두어 환경책임을 시설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UmweltHG 제1조). 이러한 환경책임법은 독일에서 이미 오래전에 물과 관련된 환경책임을 규정한 수질관리법 제22조의 이원적 책임구조 중 행위책임을 배제한 시설책임의 일원적 구조를 취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책임법은 환경위험책임의 연결점을 시설에서 찾고 있다.

시설위험책임에서 책임은 시설 이외의 유체적 위험원을 환경위험책임의 연결점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조업상 환경손해가 아닌 그 밖의 유체적 위험원에 의한 환경손해는 전보되지 않는다. 예컨대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오염물질이 시설의 공간적 범위⁷⁾내에 소재하여 발생한 것이면 환경책임법의 규율대상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환경책임법에 규율을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 때문에 입법자는 농약, 화학비료에 의한 환경손해(행위에 의한 환경손해)에 대하여 환경위험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과중한 책임이라고 생각하여 환경책임법의 규정에 환경책임을 시설책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⁸⁾. 이 경우

7) 독일 환경책임법 제3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공간적으로나 운영기술상 관계가 있고 환경침해의 발생에 중요할 수 있는 기계, 기구, 차량 기타 장소이동가능한 기술적 설비와 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전통적으로 위험책임은 시설·물건이라는 일정한 형태라는 유체적 위험원에 의한 특정한 손해발생시 그 위험을 지배하는 자 특히 위험원에서 일정한 이익을 얻는 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질관리법 제1조 제1항과 같은 행위책임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유체적이면서 객관화·특정화된 위험원에 기인하지 않고 특정한 행위(예, 물질투입, 도입 그 밖의 자연수에 대한 작용)를 책임의 근거로 하여 위험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 과연 옳은 지 의문이 든다. 특히 일회성 또는 우연한 행위(예: 어린이가 모르고 용기속의 독극물을 하수도에 버린 행위)에도 그 위험책임을 부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Karl Larenz, Die

는 제조물의 사용행위와 결합하여 행위책임으로 논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2) 연결점으로서 시설 또는 오염물질(반대제언)

환경위험책임의 연결점인 유체적 위험원으로 시설 이외에 오염물질을 포함하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시설과 공간적 연결성이 없는 경우 즉,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환경위험책임을 부여하자는 것으로 시설책임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에 의한 책임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즉, 시설위험책임의 일반적 구성요건과 물질위험책임의 일반적 구성요건을 조합한 이원적 책임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Reh binder⁹⁾에 따르면, 입법론으로 시설위험책임과 함께 환경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점유자의 위험책임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 외부에서 농약살포, 위험물질의 수송·저장·보충·교체 그 밖의 폐기물의 퇴적 등의 경우에 당연히 위험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시설위험책임에서는(위험물질의 제조·저장·수송·발생하는 시설의 위험책임) 시설·조업의 공간적 범위에서 위험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위험물질에 의한 위험책임의 범위보다는 그 책임범위가 좁아서 손해배상에 미흡하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설과 관계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자 즉, 취급에 대한 점유자의 위험책임의 인정이 필요하다.

한편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특별위험물질의 점유자와 관련한 책임 즉, 특별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점유자의 책임은 환경책임법의 개정논의에서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이러한 특별위험물질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에서 특별한 위험을 요건으로 하는 환경위험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책임으로 규율하지 못하므로 별도의 규율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 환경위험물질의 점유자는 물질에 내재된 위험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점유자의 위험책임부담시 물질의 제조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해당 점유자의 위험책임부담을 줄이는 것이 될 것이다.

Schadenshaftung nach dem Wasserhaushaltsgesetz im system der zivilrechtlichen Haftungsgründe, VerR 1963, 593 ff.; ders. SchuldR(Fn. 12), S. 729 ff.

9) Eckard Reh binder, Fortentwicklung des Umwelthaftungsrecht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uR 1989, 157

그리고 오염물질에 환경위험책임에서 물질위험책임이 아닌 일정한 행위와 연결하여 행위위험책임으로 환경위험책임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면, Gerlach¹⁰⁾은 위험시설에 대한 환경위험책임의 부여에 있어서 직업, 영업활동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함으로써 업무상 지속적으로 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직업 또는 영업행위에 대하여 환경위험책임을 도입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책임은 수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의 행위위험책임으로 설명될 수 있고, 이 책임의 실질적 목적은 위에서 언급된 환경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점유자에 대한 책임과 중복되기도 한다.

(3) 시설 및 오염물질에의 연결(반대제언)

환경위험책임을 시설위험책임으로 한정하여 볼 때, 환경위험책임에서 시설을 오염물질과 내부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시설로 한정하자는 견해는 시설보다 오염물질이라는 유체적 위험원에 환경위험책임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Henseler의 견해¹¹⁾에 따르면, 환경위험책임을 시설위험책임으로 하되, 이 책임을 발생시키는 시설을 위험물질이 내부에 존재하여 사고 또는 조업장애로 위험을 발생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유독성·부패성·폭발위험성·화재위험성·발암성·생식저해성·유전물질변형성 그 밖의 만성적인 위험이나 위해가 있는 물질이 내부규정대로 제조·가공·처리·채수거·저장되고 조업상 사용·이송·수송·소멸되는 것으로서 예견된 이외 사태가 발생하는 시설이 시설위험책임의 위험원”이 된다.

이같이 오염물질과 내부관련성을 거론하면서 시설범위를 제한할 경우, 그 시설과 오염물질은 유체적 위험원으로서 환경위험책임과 연결되게 된다.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위험책임(물질과 결합하는 위험책임)으로 시설위험책임을 구성하여 위험책임을 규율하려는 Henseler의 환경위험책임은 실질적으로는 시설보다는 오염물질에서 환경위험책임의 연결점을 찾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²⁾.

10) Johann Gerlach, Privatrecht und Umweltschutz im System des Umweltrechts, 1989, S. 337 ff.

11) Paul Henseler, Grundfragen einer Umweltgefährdungshaftung, UTR 1988, 220

(4) 분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책임법은 환경위험책임의 연결점을 시설이라는 유체적 위험원에 두는 일원적 구조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반대제언은 시설에 연결된 환경위험책임을 시설과 오염물질을 위험원으로 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거나, 시설책임을 넘어서서 시설 이외에 오염물질을 유체적 위험원으로서 환경위험책임을 인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환경책임법에 대하여 반대제언이 제시되는 이유는 전통적인 시설위험책임의 경우 예컨대 교통사고에서 손해위험은 시설(교통기관)이라는 위험원에서 발생하는 데 반하여 환경위험책임은 시설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에 연결하여 위험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경위험책임의 위험원을 시설에 한정하는 시설위험책임은 오염물질 그 자체의 환경위험(예: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의한 환경위험손해)에 대하여 환경책임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오염물질을 환경위험책임의 위험원으로 하는 견해는 시설 이외의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위험도 환경책임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반대제언은 시설 또는 공간적 관련성이 없는 오염물질에 관한 환경위험까지 환경위험책임의 부담을 주장하고 있고, 두 번째 반대제언은 시설과 더불어 오염물질에서 환경위험책임의 위험원을 찾는 것으로서 시설 그 자체가 아닌 오염물질(시설내부에 내재·발생하는 것)에 관하여도 환경위험책임의 부담을 주장하고 있다.

2. 환경작용요건의 종류와 제한

환경위험책임을 발생시키는 환경작용요건의 종류와 제한의 관련성에 대하여 환경책임법과 다른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환경손해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작용요건 이외에 소음, 진동 등의 환경작용요건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환경작용요건에 의하여 어디까지의 환경손해가 환경위험책임으로 보전하는지 문제가 된다.

12) Vgl. Eckard Reh binder. NuR 1989, 157

아래에서 환경작용요건의 종류와 제한에 관한 환경책임법과 그 반대제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환경작용요건의 공동화(空洞化)(환경책임법)

환경책임법은 환경작용에 의한 손해발생을 환경위험책임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토양·물 등 환경경로에 의한 환경작용요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래 환경작용요건은 독일연방임미시온방지법(BImSchuG, Bundes-Immissionsschutzgesetz)상 유해한 환경작용(동법 제3조 제1항¹³⁾에 의한 보호를 계수한 것으로 환경정책적인 접근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이 요건의 기능은 시설에 의한 손해발생형태와 관계없이 일반시설책임과 구분하고 있다¹⁴⁾.

한편 환경작용요건에 의한 환경손해가 환경위험책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거의 모든 환경작용은 환경경로를 통하는 것으로 환경작용요건을 제한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환경작용에 의한 손해발생은 법률상 “물질, 진동, 소음, 압력, 방사능, 가스, 연기, 열 또는 토양, 공기, 물이 확산되거나 그 밖의 현상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어서(UmweltHG 제3조 제1항), 물질의 확산에 국한하지 않고 확대하여 임미시온에 까지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작용은 환경경로를 통한 작용인 것으로 충분하고, 수질관리법 제22조와 달리 환경매체의 침해 즉, 물, 토양, 공기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성질변화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는다. 입법자에 따르면, 폭발에 의한 기계부품이 파괴되는 경우에도 압력파의 확산이라는 환경작용이 존재한다고 한다. 환경책임

13) 독일연방임미시온방지법(1974년 제정) 제3조 제1항에는 “유해한 환경영향이란 그 종류, 정도, 기간에 따라 공중(公衆) 또는 이웃에 대한 위험, 현저한 불이익이나 현저한 고통을 야기하는 임미시온을 말한다(Schädliche Umwelteinwirkungen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Immissionen, die nach Art, Ausmaß oder Dauer geeignet sind, Gefahren, erhebliche Nachteile oder erhebliche Belästigungen für die Allgemeinheit oder die Nachbarschaft herbeizuführen)”고 규정하고 있다.

14) Begründung zum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BT-Drucksache 11/7104, 1990, S. 16; Landsberg/Lülling, Umwelthaftungsrecht, Kommentar, 1991, § 3 UmweltHG UmweltHG, Rn. 3, 6

법의 해설서에는 대량 물유입으로 수류의 장애발생, 일부시설의 손상으로 물이 넘친 경우와 유독물질이 수류를 통해 연안으로 유입된 경우에도 환경작용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¹⁵⁾.

이같은 개념의 확대·적용에 대한 환경책임법은 책임 및 환경작용요건의 범위에 관한 위험책임의 일반규정에 가깝다. 일반적인 구성요건에 대한 입법제안에서 일반적 위험책임구성요건은 특별위험의 발생으로 인한 법이익침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반면 환경작용요건에 관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책임법에서도 환경작용요건의 한계를 두고 있지 않았다¹⁶⁾.

이렇게 환경작용요건의 한계를 두지 않은 것(환경작용의 공동화)의 실질적 목적은 임미시온의 일반화 즉, 환경위험 이외 손해위험도 위험책임에 따르도록 하는 위함이다. 예를 들면, 폭발에 의한 부품파손의 경우에 환경오염과 관계없는 환경위험보다는 시설의 결함에 의한 환경위험 이외의 특별손해위험으로서 위험책임을 규율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런 실질적 목적은 환경작용요건의 공동화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환경작용요건의 제한을 포기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¹⁷⁾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예는 환경법전교수초안(UGB-ProfE) 규정 중 환경위험 시설(동초안 제111조)과 관련한 환경침해라는 환경작용요건에 의해 발생된 손해에 관한 “시설에 의한 환경손해책임(동초안 112조)”과 시설에 의한 환경손해 이외의 환경작용요건에 의해 발생된 손해에 관한 “확대시설책임(동초안 제113조)”¹⁸⁾에서

15) Peter Salje, Umwelthaftungsgesetz, Kommentar, 1993, §§ 1, 3 UmwHG, Rn. 57, 65, 83, 86; Soergel/Siebert, Bürgerliches Gesetzbuch, Kohlhammer-Kommentar, Bd. 5/2, 12. Aufl. 1998, § 3 UmwHG Rn 3 Anm. 2

16) Hein Kötz, Gefährdungshaftung, in: Bundesminister der Justiz (Hrsg.), Gutachten und Vorschläge zur Überarbeitung des Schuldrechts, Bd. II, 1981, S. 1801

17) Peter Salje, Zur Kritik des Diskussionsentwurfs eines Umwelthaftungsgesetzes, ZRP 1989, 409 f.;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Umweltgesetzbuch (UGB-KomE), Entwurf der Unabhängigen Sachverständigenkommission zum Umweltgesetzbuch beim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1998, S. 772

18) Michael Kloepfer/Eckard Rehbinder/Eberhard Schmidt-Aßmann, Umweltgesetzbuch, Allgemeiner Teil, 2. Aufl. 1991, S. 81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확대시설책임은 책임의무법(HaftPflG) 제2조 제1항 제2문의 시설위험책임의 일반화를 통하여 폭발·화재·부품의 파손 등 시설의 특별 위험에 기인한 손해 일반을 보전을 하고 있다¹⁹⁾. 이는 환경위험 이외의 손해위험과 관련된 위험책임의 일반구성요건을 의식적으로 환경위험책임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2) 오염물질의 방출(유출과 배출)에 의한 환경작용요건으로 한정(반대제언)

학계에는 오염물질의 방출에 의한 환경작용을 요건으로 하여 환경위험책임에 미치는 환경손해의 범위를 좁게 보는 견해가 있다. 예컨대, 물질에 결합한 위험이 존재하는 시설에 의한 환경위험책임의 구성요건을 “사고나 규정에 따른 조업장어로 위험시설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질발생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건강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물건을 훼손하는 경우”로 하는 주장이 그 예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²⁰⁾, 시설의 사고·조업장어로 인한 법이익침해와 관련된 환경작용요건에 의해 위험물질을 방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위험책임에 규율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작용요건에 의한 환경위험에 대하여만 환경위험책임의 규율을 주장하고 있다²¹⁾. 이런 견해에 따르면, 위험물질을 방출 이외의 임미시온과 위험물질과 관련하여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물질의 내재·발생한 시설의 폭발·화재사고 등과 같은 환경오염과 관계없는 환경작용요건(부품의 추락에 따른 충격파, 연소 등)은 환경위험책임과 관련없는 문제이다.

환경위험책임을 오염물질의 방출에 의한 환경작용요건에 한정하는 것은 수질관리법 제22조의 위험책임에 관한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수질관리법 제22조 제2항의 시설책임은 투입·도입행위없이 물질이 시설에서 자연수에 도달된 경우에 시설의 사고·장애에 의한 물질방출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동법 제22조 제1항의 행위책임에서는 방사능에 의한 가해작용에 의하여 자연수에의 물질투입·도입과 그 밖의 작용에 까지 확대하고 있다.

19) Michael Kloepfer/Eckard Rehbinder/Eberhard Schmidt-Aßmann, a.a.O., S. 421

20) Paul Henseler, Grundfragen einer Umweltgefährdungshaftung, UTR 1988, 217 f.

21) Paul Henseler, a.a.O., 208

그러나 환경책임법 초안단계에서는 수질관리법 제22조의 구성요건에서 물질의 투입·도입에 대한 책임은 고려하지 않았다. 수질관리법 제정 이후 방사능에 의한 물오염의 규율은 원자력법(AtG)에 위임되었고, 자연수에 대한 그 밖의 환경작용요건을 구성요건에서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다²²⁾.

(3) 분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책임과 환경작용요건의 범위문제에서 환경책임법의 환경작용요건은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환경작용요건을 공동화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위험책임은 위험책임 일반에 의하여 규율되기 때문에 시설에서 환경작용요건 전체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반대제언은 오염물질의 방출에 의한 환경작용요건에 한정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즉, 환경위험책임과 환경손해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오염물질방출을 환경위험책임에서 핵심적 문제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독일법에서 환경위험책임의 논의 중심에는 오염물질방출에 의한 환경작용요건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율이 핵심적 과제이다.

한편 오염물질의 방출 이외의 소음·진동 등의 환경작용은 임미시온과 관련성이 존재하고, 폭발 및 화재 등 환경위험이 개입되지 않은 환경작용요건은 물질방출에 의한 환경작용요건과 동일한 사고와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염물질의 방출이라는 전형적인 환경작용요건과 더불어 물질방출과 관련된 임미시온, 물질방출과 관련된 다른 환경작용요건(환경위험이 없는 손해위험)을 하나의 구성요건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²³⁾.

이에 반하여, 반대제언은 오염물질방출이라는 환경작용요건을 환경위험책임의 중심적 규율내용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밖의 환경작용요건의 환경위험·손해위험에 대한 환경위험책임을 규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견해의 전제는 물질방출과 그 밖의 임미시온은 상호 가해구조가 다르고,²⁴⁾ 환경위험의 내용과 정도가

22) Karl Larenz, VersR 1963, 603, 605

23) Peter Salje, ZRP 1989, 409; Eckard Reh binder, NuR 1989, 155

24) Christian von Bar, Zur Dogmatik des zivilrechtlichen Ausgleichs von

다르기 때문에 환경위험성이 없는 손해위험에 대한 환경위험책임을 일반적인 환경위험책임을 아닌 또 다른 위험책임에 보고 위험책임구성요건을 구성하자는 것이다²⁵⁾.

3. 사고와 정상조업의 구별

환경책임법은 사고와 정상조업의 구별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다른 견해를 학계에서 반대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반대제언에 따르면 환경손해는 사고뿐만 아니라 정상조업 중 가해작용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위험책임에 대한 여부판단과 이론적 구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고와 정상조업의 구별이 문제된다.

(1) 사고와 정상조업의 불구별(환경책임법)

환경책임법은 특별조업의무의 준수 및 조업장애가 없는 경우에, 제6조 제2항에 “인과관계의 추정배제”, 동법 제5조에 “물적 손해에 따른 책임배제”를 두어 시설보유자의 책임경감없는 완전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규정대로 (bestimmungsgemäß)의 조업(정상조업, Normalbetrieb)과 사실상 개발위험 또는 인식할 수 없는 위험과 관련하여 시설보유자의 책임을 면책하고 있지 않다. 이는 제조물책임법(ProdHaftG) 제1조 제2항 제5호의 일정한 경우²⁶⁾에 제조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과 다른 규정이다. Kötz의 입법제안에도 환경작용요건의 원인인 사고와 정상조업의 구별이 없다²⁷⁾.

Umweltschäden, Karlsruher Forum 1987, 6; Landsberg/Lülling, Umwelthaftungsrecht, Kommentar, 1991, § 6 UmweltHG, Rn. 54

25) Peter Marburger, Grundsatzfragen des Haftungsrechts unter dem Einfluß der gesetzlichen Regelungen zur Produzenten- und zur Umwelthaftung, AcP 192, 18 f.; Dieter Medicus, Umweltschutz als Aufgabe des Zivilrechts- aus zivilrechtlicher Sicht, in: Umweltschutz und Privatrecht, 1990, S. 14 Amn. 27

26) 제조자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 과학 및 기술수준으로 결함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독일제조물책임법(ProdHaftG) 제1조 제2항 제5호)

더 나아가 환경책임법은 사고와 정상조업에 따른 책임의 여부를 구별함이 없이 환경위험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위험책임은 위험책임의 경우 사고뿐만 아니라 정상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손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렇게 장애없는 정상조업시 발생하는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위험책임에 의한 것이다. 위험책임은 허용된 위험에 동일한 가치로서 적법성과 위법성을 구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실질적으로 조업의 적법성과 위법성의 구별은 수질관리법 제22조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정상조업에 대하여는 독일민법 제906조 제2항에 의한 준위험책임²⁸⁾이 적용될 것이다²⁹⁾.

(2) 책임의 성부에 대한 구별(반대제언)

반대제언에 따르면, 위험책임의 본래의 목적은 사고에 따른 위험손해를 전보하는 것으로 사고와 정상조업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이 견해는 전통적인 위험책임구성요건의 실질적 예를 사고라는 상황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StVG) 제7조 제2항, 책임의무법(HaftpflichtG) 제1조 제2항이 면책사유와 관련하여 “사고(Unfall)”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고와 정상조업에 대한 책임여부의 구별을 주장하는 Diederichen에 따르면 사고손해와 장기손해로 구분(사고와 정상조업의 대립된 구별에 상응하는 구분)하

27) Hein Kötz, AcP 170, 25 f.; ders., Gutachten, S. 1797

28) 민법 제906조 제2항이 본질적 방해(wesentliche Beeinträchtigungen)가 그 지역에 상례적(ortsüblich)인 이용의 경우에는 방해제거청구권을 배제하고 있고, 수인해야 할 경우에 그 지역에 상례적인 이용을 넘어서는 적절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연방임미시온장지법(BImSchG) 제14조는 인가된 시설에 있어서 사법상 권원에 의한 방해(유해한 영향, benachteiligende Einwirkungen)의 경우에 그 방해배제를 위한 예방수단(Vorkehrungen)만 청구할 수 있다. 그 예방수단이 기술적 수준으로 실현할 수 없거나 경제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규정은 위험책임의 일반내용이라기 보다는 위험책임에 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Schwab/Prütting, Sachenrecht, 30. Aufl. 2002, C.H.Beck, Rn. 336.)

29) Begründung zum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BT-Drucksache 11/7104, 1990, S.15f.; Landsberg/Lülling, Umwelthaftungsrecht, Kommentar, 1991, § 4 UmweltHG, UmweltHG, Rn. 3

고³⁰⁾, 장기손해(Langzeitschäden)에 의한 책임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사고에 의한 손해위험책임을 포괄적으로 환경위험책임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대부분의 위험책임요건은 사고손해(예: 돌발사고)에 한정하고 장기손해를 요건에서 배제하고 있다. 환경손해에 대한 위험책임의 입법론으로도 환경사고(예: 탱크로리의 폭발, 화학공장에서 다량의 유독물가스누출)에 의한 손해결과와 관련한 위험책임을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고는 본래 위험책임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위험책임발생에 귀책사유가 되는 환경사고손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장기손해에 있어서는 일반위험책임을 도입하기 어렵다. 또한 장기손해에 있어서 위험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임미시운을 축적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장기손해에서 문제가 되는 대기오염피해와 소음피해의 경우, 그 원인과 현상에 대하여 확실상 또는 실무상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단순히 혐의책임(Verdachthaftung)으로 해결하고 있다³¹⁾.

이같은 견해에 따르면, 오늘날 장애없는 정상조업에 대한 책임이 장기손해 또는 점진적 손해에서 개발위험까지 확대·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연방임미시운방지법상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정상조업의 영역에서 이미 알려진 점진적 손해에 대한 학문·기술수준에 넘어선 개발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책임을 배제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환경책임법에서 개발위험을 부담하는 시설조업자는(예를 들면, 석면에 대한 손해발생의 경우) 법적용상 제조물책임법과 중복되지만 넓은 의미에서 이런 손해도 환경책임영역에서 평가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³²⁾.

30) Uwe Diederichsen, Aufbau des Individualschutzes gegen Umweltbelastung als Aufgabe des bürgerlichen und des öffentlichen Rechts (Referat), 56, DJT, Bd II, 1986, S. L93 f., L105 f.; ders., Stand und Entwicklungstendenzen des Umwelthaftungsrechts -Gefährdungshaftung und Umweltschutz -, UTR 1988, 197 f., 203; ders., Die Haftung für Umweltschäden in Deutschland, PHI 1989, 163f.; Peter Marburger, Ausbau des Individualschutzes gegen Umweltbelastung als Aufgabe des bürgerlichen und des öffentlichen Rechts (Gutachten) 56. DJT, Bd. I, 1986, 125

31) Uwe Diederichsen, DJT 1986, S. L51, L94 f.

(3) 이론적 기초에서 구별(반대제언)

환경위험책임의 이론적 기초와 관련하여 사고와 정상조업을 구별하는 견해는 전통적인 위험책임요건을 사고에 한정하고 있어서 정상조업에 의한 환경손해는 다른 위험책임과 결합하여 환경위험책임을 인정하려고 한다.

사고(협의를 조업장애)에 의한 환경손해 즉, 환경위험시설의 조업과 직접 시간적·공간적 관련을 갖는 돌발사고에 의한 환경손해에 대해서는 기존의 위험책임요건을 적용하여 위험책임에 규율할 수 있다. 적어도 조업장애(Störfall) 즉, 허용량·허용농도를 넘어 조금씩 계속하여 배출(누출장치나 측정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경우)에 대하여도 조업의 특별한 위험으로서 예상된 사고로 위험책임요건에 부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환경위험책임을 적용할 수 있다³²⁾.

이에 반하여 환경위험시설(적법이든 불법이든)의 정상조업은 시설조업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물질의 폐기처리를 위해 환경매체(예: 공기, 물 또는 토양 등)를 오염시킨 자는 그 환경매체의 다른 이용자를 사용상 위험에 빠뜨리게 되어(제3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한 것) 이용자(시설조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여하여 환경위험책임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법한 정상조업과 관련한 환경위험책임을 부정할 법정정책적 이유는 없을 것이다³⁴⁾. 또한 개발위험에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알려지지 않은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조업자의 책임을 특별위험에 의한 환경위험책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 분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고와 정상조업의 구별문제에 대하여 환경책임법은 일반 위험책임요건에 맞게 사고와 정상조업에 의한 환경손해발생시 환경위험책임

32) Uwe Diederichsen, PHI 1989, 165 f.

33) Eckard Reh binder, a.a.O., S. 154 f.

34) Paul Henseler, Grundfragen einer Umweltgefährdungshaftung, UTR 1988, 217 ff. 258; Hans Stoll, Adäquanz und normative Zurechnung bei der Gefährdungshaftung, Karlsruher Forum, 1983, 188

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반대제언에 따르면, 위험책임의 본래의 목적은 사고에 의한 위험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상조업에 인한 환경위험책임은 사고에 의한 환경위험손해책임과 다른 책임여부와 다른 판단 및 이론적 기초를 갖는다고 한다.

오늘날 환경위험이 정상조업상 예상과 반대로 다량의 환경물질이 갑자기 또는 급격하게 다량배출에 의해 예상치 못한 대형사고 뿐만 아니라 소량물질이라도 계속적으로 배출되는 사고도 많다. 그러나 전통적인 위험책임의 규율대상인 위험손해는 수송수단·에너지시설·위험물에 폭발·충돌·화재로 인한 법이억침해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상조업에 의한 손해위험이 환경손해 밖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환경위험책임상 실질적 의미가 없지만, 이에 대한 위험책임의 규율문제는 환경책임법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³⁵⁾.

아울러 환경책임법이 사고와 정상조업을 구별하지 않은 이유는 사고에 의한 환경손해를 정상조업에 의한 환경손해에 대한 특별위험의 발현과 다름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³⁶⁾. 따라서 책임여부의 판단 및 이론적 기초에 대하여 사고라는 환경손해구성요건을 정상조업에 의한 환경위험책임과 구별하여 특별히 취급할 필요가 없다. 이에 반하여 반대제언은 사고와 정상조업을 구별하면서 그 특성을 인정하고 있다. 환경위험책임의 성립을 사고에 한정하는 반대제언에 따르면, 정상조업상 특별한 형태의 환경위험으로 장기손해(예: 축적된 손해, 점진적 손해) 및 개발위험을 거론하면서 정상조업에 까지 위험책임을 부여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정상조업에 대한 환경위험책임을 전통적인 위험책임에 근거한다는 반대제언에 따르면, 전통적인 위험책임에서는 사실상 사고에 의한 손해위험의 고유내용(계획위반, 제어상실, 기능전부불능)이 정당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정상조업시 발생하는 환경손해에서 계획적·계속적인 오염물질배출의 경우, 이에

35) Josef Esser, Grundlagen und Entwicklung der Gefährdungshaftung, 1981, 2. Aufl., S. 10

36) Jurgen Knebel, Überlegungen zur Fortentwicklung des Umwelthaftungsrechts, UTR 1988, 268; Johann Gerlach, Privatrecht und Umweltschutz im System des Umweltrechts, Duncker & Humblot, 1989, S. 20; Hager, Das neue Umwelthaftungsgesetz, NJW 1991, 136

대한 새로운 이론적 근거(예: 환경매체를 이용한 오염물질의 폐기처리에 기인한 위험책임)를 제시하면서 이를 환경위험책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³⁷⁾.

4. 복수오염원의 책임범위

환경책임법과 그 반대제인은 복수오염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오염축적(예: 축적 임미시온) 또는 복합오염에 의한 심각한 환경오염은 종종 복수오염원과 결합 또는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한다. 아래에서 이에 관한 책임문제의 견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복수오염원의 연대책임(환경책임법)

독일은 복수귀책원인의 경합·관여가 존재하는 경우 복수당사자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복수의 귀책사유의 원인에 대한 경합사례의 경우 즉, 경합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독일민법 제840조(수인의 책임) 제1항³⁸⁾이 과실책임으로서 복수당사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위험책임과 관련해서도 책임의무법(HaftPflG) 제13조, 도로교통법(StVG) 제17조, 항공교통법(LuftVG) 제41조 등이 복수당사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복수의 귀책원인의 관여사례(즉, 각각 귀책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하여는 독일민법 제830조 제1항 제2문³⁹⁾에서 인과관계의 추정에 의하여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복수시설에서 환경작용에 의한 법이익침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범위에 관하여

37) Hager, Umweltschutz und Privatrecht, JZ 1990, 400; Paul Hesel, UTR 1988, 218

38) 독일민법 제840조 제1항은 “하나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수인이 각자 책임을 부담할 때에는 그 들은 연대책무자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9) 독일민법 제830조 제1항 제2문에는 “수인의 관계자 중 누구의 행위가 그 손해를 발생하였는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제830조 제1항 제1문의 관여당사자의 연대책임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환경책임법은 관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과거 정부초안에는 복수시설보유자의 분할책임을 규정(정부초안 제8조)하고 있었으나, 법안 심의 최종단계에서 연방참의회의 반대로 삭제되었다⁴⁰⁾. 더 나아가 환경책임법에는 복수오염원의 책임범위에 대한 대체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다. 따라서 귀책원인의 경합·관여의 일반이론(연대책임)이 복수시설에 대한 환경작용의 경합·관여에 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수시설에서 환경작용의 경합사례와 관련해서 환경책임법에서는 단독으로 위해하지 않은 개별원인의 복수축적이나, 화학적·생물학적 병합에 의한 일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복합적 원인관계), 개별원인의 귀책당사자는 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연대책무자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⁴¹⁾. 또한 복수의 환경작용의 경합사례에서도 책임원인의 경합에 관해서와 같이 독일민법 제840조 제1항에 의한 연대책임을 준용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수책임자의 분할책임을 인정한 정부초안 제8조를 입법과정에서 삭제하고, 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체규정을 마련없이, 독일민법 제840조 제1항의 연대책임과 같이 복수책임자에 대한 연대책임의 부여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복수의 환경책임에 관한 환경책임법 제1조는 책임의무법 제13조, 도로교통법 제17조, 항공교통법 제41조에 근거한 것으로 환경손해인 위험손해발생시 복수책임자의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에 각 시설보유자는 연대책무자로서 환경작용의 손해정도에 따라 상호 내부관계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복수시설에 의한 환경작용의 관여사례(즉, 각 환경작용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와 관련하여 복수시설이 결과발생과 관련된 경우에 각 시설과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환경책임법 제6조와 제7조는 민법 제830조 제1항 제2문(공동불법행위와 관여자)과 수질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2문(물의 성질변경에 대한 책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환경책임법 심의과

40) 연방의회에서 환경책임법에 제8조를 존치할 것을 가결했으나, 연방참의원은 양원협의회(Vermittlungsausschuß)의 설치를 요구하여 거기에서 협의결과 동조는 삭제되었다(BT-Drucksache 11/8208, S.2; BT-Drucksache 741/90 S. 2)

41) Landsberg/Lülling, Umwelthaftungsrecht, Kommentar, 1991, § 1 UmweltHG, Rn. 203

정에서 연대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830조 제1항 제2문의 존재를 인지하여 정부초안 제8조(분할책임)를 최종심의단계에서 삭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복수의 환경작용의 관여사례에도 귀책원인과 관련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연대책임을 적용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로 보인다⁴²⁾.

복수의 책임원인의 관여사례에 관하여는 민법 제830조 제1항 제2문과 수질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2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연대책임(Gesamtschuld)을 부여하게 된다. 민법 제830조 제1항 제2문에 관하여 각 관련당사자의 행위가 전체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어느 관여자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연대책임을 부담할 것이지만, 축적임미시온의 경우 각각 오염원이 전체손해의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연대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독일연방법원(BGH)은 1971년 양어장오염사건의 판결⁴³⁾에서 전체손해의 공동발생의 관여성이 없는 복수관련당사자에게 수질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2문의 연대책임을 적용한 것은 민법 제830조 제1항 제2문의 연대책임의 본래의 목적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⁴⁾. 이 판결에 따르면, 다른 유해물질과 함께 손해를 발생한 원인인 유해물질이 복수시설에서 자연수에 도달된 경우, 각 시설보유자는 전체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때 이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요구되지 않는다⁴⁵⁾. 이런 판결내용에 따르면, 환경책임법 제6조와 7조를 수질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2문과 같은 취지를 가진 규정으로 볼 수 있다⁴⁶⁾.

42) Landsberg/Lülling, Umwelthaftungsrecht, Kommentar, 1991, § 7 UmweltHG/UmweltHG, Rn. 20. 22; dies., Das neue Umwelthaftungsgesetz, DB 1990, 2208

43) BGHZ 57, 257, 261 ff.

44) Vgl. Landsberg/Lülling, Umwelthaftungsrecht, Kommentar, 1991, § 6 UmweltHG/UmweltHG, Rn. 19; Heinz-Dieter Assmann, Rechtsfragen des Kausalitätsnachweises bei Umweltschäden, in Fritz Nicklich (Hrsg.), Prävention im Umweltrecht, 1988, S. 170; ders., Multikausale Schäden im deutschen Haftungsrecht, in Attila Fenyves/Hans-Leo Weyers (Hrsg.), Multikausale Schäden in modernen Haftungsrechten, 1988, S. 136 f.

45) Johannes Köndgen, Überlegungen zur Fortbildung des Umwelthaftpflichtrechts, UPR 1983, 354; Uwe Diederichsen, DJT 1986, S. 90 f.

(2) 정상조업에 의한 분할책임(반대제언)

반대제언에 따르면, 복수오염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할책임의 도입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에, 독일민법 제830조 제1항 제2문, 제840조과 수질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연대책임을 복수오염원의 경합·관여에 까지 준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그 예로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상조업과 관련한 복수시설보호자의 연대책임을 분명하게 배제하고 있는 환경책임법 정부초안 제8조를 들고 있다.

* 환경책임법 정부초안 제8조

“손해가 복수당사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제기한 시설보유자가 시설규정대로 조업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 그 원인기여정도에 상응하는 분할책임을 부담한다”

동조의 기초이유는 손해원인에 의하여 손해 전체가 복수시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독일민법 제830조 제1항 제2문의 유추적용에 의한 연대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 조업자는 정상조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오염물질의 방출에 대하여도 공동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책임의 영역에서 이러한 유추적용은 예측이 불가능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손해분쟁사건에 대하여 모든 시설보유자를 연대책무자로서의 책임을 적용한다면, 가해자는 정상조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주된 가해자를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 하지 않고, 다수의 가능성있는 원인제공자 중에 가장 재력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게 된다. 독일민법 제426조(구상채무, 채권이전)에 의한 연대책무자 사이의 구상권에 있어서도 배상청구의 상대방이 공동책임자로서 해명위험과 무자력의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위험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⁴⁷⁾. 오히려 정상조업은 사회적으로 활발한

46) Vgl. Landsberg/Lülling, Umwelthaftungsrecht, Kommentar, 1991, § 6 UmweltHG, Rn. 62 ff.

47) Brox/Walker, Allgemeines Schuldrecht, 28 Aufl. 2002, C.H.Beck, S. 399 ff.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대책무의 원칙에 의하여 원인제공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원인제공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⁴⁸⁾.

(3) 분할책임의 일반화(반대제언)

환경책임법 정부초안 제8조의 분할책임이 정상조업의 경우에 관한 것인 반면, 학설은 일반적으로 분할책임의 일반화를 주장하고 있다⁴⁹⁾. 환경법전교수초안 제120조는 정상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복수원인제공자의 책임을 분할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 환경법전교수초안 제120조

“손해가 복수당사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본질적 조건을 설정하는 자는 각각 그가 야기한 손해부분에 대한 책임(Verursachungsanteil)을 부담한다는 민사소송법 제(ZPO) 제287조를 준용한다”

동초안이유서에 의하면, 수질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2문은 공동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손해발생에 대해 연대책무자로서 책임을 부과할 경우 동초안 제120조를 따르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왜냐하면, 공동발생의 가능성만으로는 연대책임 아닌 단순 혐의책임(Verdachtschuld)에 의한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동원인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도 연대책무자로서 책임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반면, 상호 어떤 결합관계도 없는 원인제공자에게 내부적 구상권에서 분담할 부분에 대한 입증위험 또는 무자력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양자의 이익조정을 위해 분할책임이 적절할 것이다⁵⁰⁾.

환경책임법 정부초안 제8조와 환경법전교수초안 제120조의 각각이유서에서 분

48) Begründung zum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BT-Drucksache 11/7104, 1990, S. 19; Gegenäußerung der Bundesregierung des Bundesrates, BT-Drucksache 11/7104, 1990, S. 31

49) Josef Knebel, UTR 1988, 272f.; Dieter Medicus, a.a.O., S. 17 f.

50) Kloepfer/Rehbinder/Schmidt-Aßmann, a.a.O., S. 427

할책임의 도입을 주장하는 반대제언은 복수오염원에 대한 연대책임의 부당성으로 내부 구상권의 입증위험, 무자력위험부담 이외에 책임범위의 예측불가능성, 관련당사자의 혐의책임화(혐의가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등을 설명하고 있다.

(4) 분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오염의 경합·관여의 경우 복수당사자의 환경손해책임에 대하여 환경책임법은 정부초안에서 제시된 정상조업에 따른 분할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환경책임법은 복수귀책원인의 경합·관여의 경우에 일반 책임법상 연대책임을 - 귀책원인의 경합사례에서 연대책임(독일민법 제840조 제1항)- 환경손해에도 적용하여 복수오염원의 연대책임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학설의 반대제언은 연대책임의 일반화를 주장하면서 의식적으로 이를 배제하여 정상조업 혹은 그 밖의 경우에도 분할책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손해배상 일반(예: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복수귀책원인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한정된 수의 귀책원인의 경합·관여없이 각각 귀책원인이 그 단독으로도 결과(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환경손해는 간혹 다수의 오염원에서 작은 가해작용의 축적·복합에 의한 집합적 손해의 모습으로(다수축적손해) 그 각각 오염원이 전체 손해를 발생하게 하지 않고 다수의 오염원이 경합·관여되어 있다. 환경책임법이 이같은 사정을 전제로 하여 더욱더 복수오염원에 의한 환경손해를 귀책원인의 경합·관여 일반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연대책임으로 다루는 경향은 물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2문의 연대책임에 관한 판례를 기초로 하여 피해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반대제언이 복수오염원의 분할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복수오염원에 의한 환경손해에 특유한 사실상황과 관련하여 분할책임이 요구될 수밖에 없고, 환경의 복수오염에서 귀책원인의 경합·관여는 다른 위험책임 일반과 다름에 따른 것이다. 복수오염원의 연대책임을 부여함에 대한 반대제언의 비판이 어찌되었든 환경손해 특유의 다수축적손해를 생각해 볼 때, 복수오염에 대한 연대책임은 개별오염원자에게 지나친 책임부담이(내부 구상권에 관한 입증위험, 무자력위험부담, 책임의 예측불가능성, 혐의책임화) 될 것이다.

5. 소결

(1) 환경책임법

환경책임법은 환경손해책임에 대하여 이원적이 아닌 일원적 책임을 내용으로 하면서, 시설이라는 유체적 위험원과 연결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손해가 시설의 공간적 범위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환경책임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또한 환경책임법은 가해작용요건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위험책임의 일반에 가까운 규정으로서 환경책임에서 “환경작용요건의 공동화(空洞化)”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사고와 정상조업의 구별없이 환경손해책임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복수시설에서 환경작용에 의한 범의익침해의 경우에 책임범위를 환경책임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더 나아가 분할책임을 규정한 정부초안 제8조가 심의과정에서 삭제됨으로써 복수당사자의 책임에 관한 다른 관련규정(독일민법 제840조, 책임의무법 제13조, 도로교통법 제17조, 항공교통법 제41조)에 따라 복수당사자의 연대책임을 부여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환경책임법은 시설위험책임을 기초한 환경책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시설 또한 별표 1(소방시설 등 96가지 시설)에 열거한 것에 한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책임법은 유체적 위험원의 내용제한이나 가해작용의 원인(사고·정상조업)의 구별을 기본적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 아울러 복수오염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해석상 복수귀책자의 연대책임에 규정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어, 복수오염손해에 대한 귀책사유의 경합·관여의 경우에는 복수당사자의 연대책임으로 규율하게 된다.

(2) 반대제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대제언은 환경책임법에 대하여 비판적(수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첫째, 환경위험책임의 연결점에 관하여 시설에서만 환경책임의 연결점을 찾는 환경책임법을 비판하면서, 시설 또는 그것의 공간적 관련성이 없는 오염물질에

까지 환경위험책임을 적용하자는 견해와 시설과 함께 오염물질에서 환경위험책임을 위험원을 찾는 것으로 시설 그 자체가 아닌 오염물질(시설내부의 내재·발생하는 물질)에 관하여 환경위험책임을 적용하자는 견해로 나뉜다. 이러한 견해는 일원적 구성을 보완하는 것으로 시설뿐만 아니라 물질에 의한 위험책임을 인정하는 이원적 구성(시설위험책임과 물질위험책임)을 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둘째, 환경책임법이 환경작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한 환경작용요건의 공동화(空洞化)을 비판하면서, 환경작용요건을 제한하여 오염물질방출(유출과 배출)에 의한 가해작용에 한하여 환경위험책임을 규율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오염물질방출 이외의 경우에는 환경위험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셋째, 환경책임법이 사고와 정상조업을 구별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환경위험책임을 성부와 이론적 기초로서 사고와 정상조업의 구별을 주장하고 있다. 즉, 환경위험책임을 범위와 관련하여 위험책임의 본래목적은 사고에 의한 위험책임을 전보하는 것으로서 사고와 정상조업을 구별하고 있다. 또한 환경위험책임을 전통적인 위험책임이론에 근거하여 사고에 의한 환경위험책임에 한정하고 정상조업에 의한 환경손해책임을 배제하되, 다른 위험책임과 결합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위험책임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넷째, 환경책임법이 복수오염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복수오염자의 분할책임과 더 나아가 그 일반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내부 구상권의 입증위험, 무자력위험부담, 책임의 예측불가능성, 혐의책임화를 들고 있다.

IV. 환경책임법 제정에 대한 시사점

아래에서는 위에서 검토·분석한 독일 환경책임법의 주요논쟁사항을 바탕으로 장차 환경책임법상 환경책임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대하여 4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환경책임을 시설책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행위책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둘째, 환경작용요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셋째, 환경책임에 있어서 사고·정상조업을 구별의 필요성이 있는 가, 마지막으로 복수오염원의 책임은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 가로 나누어 언급하기로 한다.

1. 시설책임 또는 행위책임

독일 환경책임법은 피해자를 환경책임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리고 제정 당시에 이미 존재하는 수질관리법의 이원적 책임 구조 중 행위책임을 배제하여, 환경책임법상 책임을 행위책임이 아닌 시설책임(UmweltHG 제1조)으로 규율하였다. 이러한 시설책임은 시설 이외의 유체적 위험원에 의한 환경손해를 진보할 수 없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직접적 환경원인에 의한 환경책임만을 규율(UmweltHG 제3조 제1항)하고 있고, 간접적 환경책임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의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오염가능 물질 또는 간접적 오염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산업환경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 책임을 규정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그렇다면 장차 제정될 환경책임법에서는 적어도 독일 환경책임법과 같이 시설책임에 국한하여 환경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환경책임법에서는 시설책임뿐만 아니라 행위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31조⁵¹⁾(1990년 제정)의 “무과실책임”의 연장선에서 환경책임법의 행위 책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환경의 유체적 위험원은 시설뿐만 아니라 사람의 활동(행위)에서 비롯되고, 그 대부분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더 환경책임에 행위 책임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경 책임을 시설책임과 행위 책임으로 하고, 이에 무과실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환경 책임을 광범위하게 규율함으로써 법의 실효성과 과도한 위험부담으로 인한 산업발전의 저해가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환경분쟁조정법상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그 제도를 좀더 구체화·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제조물책임법(무과실 책임을 수용)에 규정한 면책사유(제조물책임법 제4조)와 같은 환경책임의 면책사유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51)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의 범리”는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도 배상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전경운,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 환경법연구 제25권 제1호, 2003, 70, 76쪽)

2. 환경작용요건의 종류와 제한

독일 환경책임법은 환경작용요건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UmweltHG 제 3조 제1항). 이는 임미시온의 일반화 즉, 환경위험 이외의 손해를 발생하는 위험도 위험책임으로 취급하려는 목적이 있다. 예를 들면, 폭발에 의한 기계파손의 경우 압력파의 확산, 대량 물유입으로 수류장애발생, 유독물질의 수류의 유입 등에도 위험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작용요건의 공동화(空洞化)”는 환경책임을 일반화하게 되고, 환경위험 이외의 위험도 위험책임으로 구성하는 불합리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작용요건의 공동화는 환경위험 이외의 손해위험도 부담하게 되어 무과실책임에 따른 환경손해의 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환경책임과 더불어 또 다른 환경책임자의 과중한 책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오염물질의 방출 이외의 소음·진동 등의 환경작용은 임미시온과 관련성이 존재하고, 폭발 및 화재 등 환경위험이 개입되지 않은 가해작용은 물질방출에 의한 환경작용요건과 동일한 사고와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염물질의 방출이라는 전형적인 환경작용요건과 더불어 물질방출과 관련된 임미시온, 물질방출과 관련된 다른 환경작용요건(환경위험이 없는 손해위험)을 하나의 구성요건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⁵²⁾. 또한 환경위험물질의 방출과 임미시온은 상호 가해구조과 환경위험의 내용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위험성이 없는 위험을 환경위험이 아닌 다른 위험책임으로 보고 그 위험책임구성요건을 달리 구성하는 것도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다⁵³⁾.

이러한 환경작용요건의 제한은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제3조 제4호)”와 “환경훼손(제4조의2)”의 개념에 대한 열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날로 확대되는 환경위험책임을 구체화하며, 과도한 환경책임을 완화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진작시키는 역할 그리고 법적 안정이 기대될 것이다⁵⁴⁾.

52) Salje, ZRP 1989, 409; Reh binder, NuR 1989, 155

53) Peter Marburger, Grundsatzfragen des Haftungsrechts unter dem Einfluß der gesetzlichen Regelungen zur Produzenten- und zur Umwelthaftung, AcP 192, 18 f.

3. 사고·정상조업의 구별

독일 환경책임법은 특별조업의무의 준수 및 조업장애가 없는 경우(UmweltHG 제5, 제6조 제2항 참조) 시설보유자의 책임면책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조업과 사실상 개발위험 또는 인식할 수 없는 위험과 관련한 시설보유자의 면책규정도 없다. 이는 독일 제조물책임법 제1조 제2항 제5호에서 제조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다. 더 나아가 독일 환경책임법은 가해작용의 원인인 사고와 정상조업을 구별함이 없이 환경위험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본래 위험책임의 목적은 사고에 따른 위험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고와 정상조업은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와 정상조업의 구별은 정상조업에 의한 손해에 일반위험책임을 도입, 인과관계의 입증의 어려움, 그리고 정상조업에 따른 손해(예: 대기오염피해, 소음피해 등)의 원인과 현상이 학설상·판례상 이론정립의 미흡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 만약 환경위험시설의 정상조업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환경매체(예: 물, 공기 또는 토양)를 오염시켜서 이의 사용자를 위협에 빠지게 한 경우에는 시설책임자를 무과실책임을 부여하게 함으로써 결국 환경위험을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책임법에는 일반위험책임요건에 맞게 사고와 정상조업의 구별하여, 환경손해발생시 환경위험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위험책임은 사고에 의한 손해위험을 전보하는 이론과 부합하기도 하고, 정상조업에 의한 환경위험책임은 새로운 이론적 근거를 개발하는 것이 환경위험책임의 목적에도 부합할 것이다⁵⁴⁾.

4. 복수오염원의 책임

독일 환경책임법에는 복수시설에서 환경작용에 의한 손해발생의 경우, 책임범위에 관하여 관련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하나의 손해발생에 대하여 다수의

54) 최광준, "독일환경책임법의 기본구조와 주요내용", 재산법연구 제21권 제2호, 2006, 320쪽

55) Hager, JZ 1990, 400; Paul Heseler, UTR 1988, 218

환경작용이 존재하는 경우, 그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부초안에는 복수시설보유자의 분할책임을 규정(정부초안 제8조)하였으나, 법안 심의 최종단계에서 연방참의회에 반대로 삭제되었다⁵⁶⁾. 이는 연대책임을 규정한 독일민법 제830조 제1항 제2문의 존재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독일민법 제830조 제1항 제2문과 수질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2문은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독일 민법 제830조 제1항 제2문을 적용하여 복수당사자는 환경책임의 연대책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복수당사자 중 어느 누군가 정상조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당사자라는 것 때문에 전혀 예견되지 않는 손해를 부담하게 된다. 더욱이 정상조업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연대책무로 인하여 전혀 손해원인의 제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재정적 위험에 빠지게 되고, 또한 연대책무자 사이에 구상권에도 배상청구의 상대방이 공동책임자로서 해명위험과 무자력의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위험조정이 쉽지 않다⁵⁷⁾. 이런 이유로 환경책임법 정부초안 제8조의 “정상조업에 의한 분할책임” 또는 환경법전교수초안 제120조의 “분할책임의 일반화”의 의견이 다시 제시되고 있다. 즉, 이는 정상조업의 경우에 원인기여정도에 상응하는 분할책임을 부담시키거나 정상조업의 여부와 관계없이 복수원인제공자의 책임을 분할하자는 견해이다.

한편 위와 같이 독일민법이 하나의 손해발생에 수인이 관여하였지만 상호 간의 의사공동이 없는 독립적 공동불법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 민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독일민법에서의 독립적 공동불법행위는 우리 민법하에서는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로 다루어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독일의 공동불법행위와 우리나라의 공동불법행위는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적 공동불법행위도 민법 제760조를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객관적 공동설)하여 적용하고 있다⁵⁸⁾.

따라서 장차 제정될 환경책임법에서는 복수오염원의 책임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의 적용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환경책임법에 복수오염원의 책임을 분할책

56) BT-Drucksache 11/8208, S. 2; BT-Drucksache 741/90 S. 2

57) Brox/Walker, Allgemeines Schuldrecht, 28 Aufl. 2002, C.H.Beck, S. 399 ff.

58)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3, 753 내지 754쪽; 대판 1989.5.23. 87다타2723

임(독일 환경법전교수초안 제120조)을 원칙으로 하되, 오염제공자가 정상조업의 경우에는 원인기여정도에 상응하는 분할책임(독일환경책임법 정부초안 제8조)을 부담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V. 결론

오늘날 환경오염문제는 우리생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환경오염은 공장·사업장 등의 생산 활동, 자동차·기차·항공기·선박 등의 수송활동, 냉난방·취사·여가선용 등 일상생활을 포함한 각종 인간 활동에 의해 유발되는 인위적인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소음·진동·지반침하·악취 등의 발생으로,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손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생활 및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은 결국 모든 인간에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의 예방적 차원 또는 환경보전적 차원에서 공법적 규제⁵⁹⁾도 필요하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손해진보문제는 결국 사법적 구제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이에 관한 법률이 “환경책임법”이다.

따라서 환경책임법에 담길 환경책임과 관련된 규정이 당사자의 구제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환경오염의 정의와 범위, 환경오염의 유체적 위험제공자와 그 책임의 범위 등의 내용이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된다. 아울러 사법적 구제는 국가의 환경정책의 기본틀과 관련하여 그 내용과 범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환경책임의 문제는 환경정책과 분리되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책임도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무과실책임⁶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책임을 유지함에 따른 문

59) 공법적 규제를 내용을 하는 법률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 등 그 밖의 다수의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

제점(예: 책임확대, 원인입증의 어려움, 입증책임의 전환문제⁶¹⁾, 귀책사유없는 책임, 산업의 위축, 사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등등)이 예견되지만, 이런 예견되는 문제점은 관련규정의 제정과 보완(예를 들면, 제조물책임법의 제조자면책사유규정과 같이 환경오염책임자의 면책사유규정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원칙을 유지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할 책무(헌법 제35조의 환경권)를 부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책임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면책사유가 존재하는 무과실책임, 환경오염의 열거주의, 환경책임에 대한 사고와 정상조업의 구별, 복수오염원에 대한 원칙적 분할책임의 도입 등을 환경책임법에 반영할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60)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진경운,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 환경법연구 제25권 제1호, 2003 ; 최광준, “독일환경책임법의 기본구조와 주요내용”, 재산법연구 제21권 제2호, 2006; 윤용석, “환경오염의 민사책임에 관한 새로운 동향”, 재산법연구 제11권, 1994, 73쪽

61) 윤용석, “환경오염의 민사책임에 관한 새로운 동향”, 재산법연구 제11권, 1994, 63쪽 참조

참고문헌

- 김민중(역), 에르빈 도이취, “독일 환경책임의 이론과 근본원칙”, 한독법학, 1991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3,
윤용석, “환경오염의 민사책임에 관한 새로운 동향”, 재산법연구 제11권, 1994
전경운, 환경침해책임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7
_____,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 환경법연구 제25권 제1호, 2003
최광준, “독일환경책임법의 기본구조와 주요내용”, 재산법연구 제21권 제2호,
2006
- Begründung zum Gesetzentwurf des Bundesregierung, BT-Drucks
11/7104, 1990
Bericht des Rechtsausschusses, BT-Drucks 11/7811, 1990
Brox/Walker, Allgemeines Schuldrecht, 28 Aufl. 2002, C.H.Beck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Umweltgesetzbuch (UGB-KomE), Entwurf der Unabhängigen
Sachverständigenkommission zum Umweltgesetzbuch beim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1998
Christian von Bar, Zur Dogmatik des zivilrechtlichen Ausgleichs von
Umweltschäden, Karlsruher Forum 1987
Dieter Medicus, Umweltschutz als Aufgabe des Zivilrechts- aus
zivilrechtlicher Sicht, in: Umweltschutz und Privatrecht, 1990
Eckard Reh binder, Fortentwicklung des Umwelthaftungsrecht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uR 1989
Gegenäußerung der Bundesregierung des Bundesrates, BT-Drucks
11/7104, 1990
Hager, Das neue Umwelthaftungsgesetz, NJW 1991
Hans Stoll, Adäquanz und normative Zurechnung bei der

- Gefährdungshaftung, Karlsruher Forum, 1983
- Heinz-Dieter Assmann, Rechtsfragen des Kausalitätsnachweises bei Umweltschäden, in Fritz Nicklich (Hrsg.), Prävention im Umweltrecht, 1988
- ders., Multikausale Schäden im deutschen Haftungsrecht, in Attila Fenyves/Hans-Leo Weyers (Hrsg.), Multikausale Schäden in modernen Haftungsrechten, 1988
- Hein Kötz, Gefährdungshaftung, in: Bundesminister der Justiz (Hrsg.), Gutachten und Vorschläge zur Überarbeitung des Schuldrechts, Bd. II, 1981
- Johann Gerlach, Privatrecht und Umweltschutz im System des Umweltrechts, 1989
- Johannes Köndgen, Überlegungen zur Fortbildung des Umwelthaftpflichtrechts, UPR 1983
- Josef Esser, Grundlagen und Entwicklung der Gefährdungshaftung, 1981
- Jurgen Knebel, Überlegungen zur Fortentwicklung des Umwelthaftungsrechts, UTR 1988
- Karl Larenz, Die Schadenshaftung nach dem Wasserhaushaltsgesetz im system der zivilrechtlichen Haftungsgründe, VerR 1963
- Karl Larenz/Claus-Wilhelm Canaris, Lehrbuch des Schuldrechts II/2, 1994
- Kloepfer/Rehbinder/Schmidt-Aßmann, Umweltgesetzbuch, Allgemeiner Teil, 2. Aufl. 1991
- Landmann/Rohmer/Rehbinder, Umweltrecht, Kommentar, Bd III, 32 Erg.-Lfg. 1999
- Landsberg/Lülling, Umwelthaftungsrecht, Kommentar, 1991, UmweltHG dies., Das neue Umwelthaftungsgesetz, DB 1990
- Michael Kloepfer/Eckard Rehbinder/Eberhard Schmidt-Aßmann, Umweltgesetzbuch, Allgemeiner Teil, 2. Aufl. 1991

- Paul Henseler, Grundfragen einer Umweltgefährdungshaftung, UTR 1988
- Peter Marburger, Ausbau des Individualschutzes gegen Umweltbelastung als Aufgabe des bürgerlichen und des öffentlichen Rechts (Gutachten) 56. DJT, Bd. I, 1986
- ders., Grundsatzfragen des Haftungsrechts unter dem Einfluß der gesetzlichen Regelungen zur Produzenten- und zur Umwelthaftung, AcP 192
- Peter Salje, Umwelthaftungsgesetz, Kommentar, 1993
- ders., Zur Kritik des Diskussionsentwurfs eines Umwelthaftungsgesetzes, ZRP 1989
- Soergel/Siebert, Bürgerliches Gesetzbuch, Kohlhammer-Kommentar, Bd. 5/2, 12. Aufl. 1998
- Uwe Diederichsen, Aufbau des Individualschutzes gegen Umweltbelastung als Aufgabe des bürgerlichen und des öffentlichen Rechts (Referat), 56, DJT. Bd II, 1986
- ders., Stand und Entwicklungstendenzen des Umwelthaftungsrechts -Gefährdungshaftung und Umweltschutz -, UTR 1988
- ders., Die Haftung für Umweltschäden in Deutschland, PHI 1992 , S. C125

<Zusammenfassung>

Wichtige Streitpunkte für die Verabschiedung Umwelthaftungsgesetzes
in Deutschland und dessen Andeutungen in Korea

Choi, Myung Gu

Das Umwelthaftungsgesetz vom 10. 12. 1990 statuiert eine verschuldensunabhängige Gefährdungshaftung für Schäden durch Umwelteinwirkungen. In zur Zeit der Verabschiedung Umwelthaftungsgesetzes ist der Professoren-Entwurf für den allgemeinen Teil eines Umweltgesetzbuches fertiggestellt worden, der zum Teil verschiedener Meinung wie Umweltgesetz-Entwurf ist. Vor allem waren aber der Verbindungspunkt des Umweltgefährdungshaftungs, die Angriffseinwirkung, Unfall & Normalbetrieb und der Verantwortungsbereich der multifaktorielle Verschmutzungsquelle bezüglich streitsüchtig.

Zuerst kann der Verbindungspunkt der Umweltgefährdungshaftung mit der Anlagehaftung im Bezug stehen. Die Wissenschaftler nimmt ein kritische Haftung gegen diesem Punkt ein. Nach dieser Einwände die Umwelthaftung finden es sich die Anlage und das Verschmutzungsstoff, mit den die Umwelthaftung verknüpft wird.

Der Umwelthaftungsgesetz hat zweitens nicht die Voraussetzung für die Umwelthatung. Umgekehrt hat nach dem Wissenschaftler der Umwelthaftung nur die Ausfluß der Gefährdungstoffe bestimmt.

Drittens hat der Umwelthatungsgesetz den Unfall und das Normalbetrieb nicht vereinzelt. Der Wissenschaftler hat aber die Einteilung für die Gefahrenschuld ausgeäußert.

Viertens bestimmt das Umwelthatungsgesetz gesetzlich die Gesamtschuld für den Verantwortungsbereich der multifaktorielle Verschmutzungsquelle.

Aber hat der Wissenschaftler die Einteilungsschuld im Falle des Normalbetrieb erläutert.

Am Ende ist Andeutung über mehrere Überdenkungen der Festsetzung Umwelthaftungsgesetzes in Korea durch wichtige Streitpunkte für die Verabschiedung Umwelthaftungsgesetzes in Deutschland gemacht worden.

주 제 어 환경책임, 오염물질, 연대책임, 분할책임, 사고, 정상조업, 복수오염원
Key word Umweltschuld, Verschmutzungsstoffe, Gesamtschuld, Teilungsschuld. Unfall,
Normalbetrieb, multifaktorielle Verschmutzungsquelle